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

1. 펀드명 : IBK 밸류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4호[주식]

2. 주요 변경 사항 :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시행일 : 2023년 5월 23일

4. 변경대비표

항 목	변경 전	변경 후
용어 변경	대차대조표 제O영업일	재무상태표 O영업일
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	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(중략)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	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(중략)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① 1~2 (생략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	① 1~2 (현행과 같음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제45조의2(집합투자기구의 소규모 해소)	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해소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	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1년(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해소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② 1 (생략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	② 1 (현행과 같음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

	3~5 (생략)	포함한다) 3~5 (현행과 같음)
부 칙	(신설)	**제1조(시행일)** 이 신탁계약은 202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